

방송통신기자재등의

[] 적합성평가확인

[] 사전통관

신청(확인)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 시	
①요건신청번호		②요건승인번호		③B/L번호			
④수입자	상 호 (명 칭)			사업자등록번호			
	대 표 자 성 명			연 락 처		전화번호 팩스번호	
	주 소					(우)	
⑤수입화물주	상 호 (명 칭)			사업자등록번호			
	대 표 자 성 명			연 락 처		전화번호 팩스번호	
	주 소					(우)	
⑥ 품 명							
⑦ 기자재명칭 (거 래 품 명)							
⑧ 모 델 명				금 액			
⑨ H S 번 호		⑩ 인증·등록·관리번호 (시험기관/신청번호)				⑪ 수 량	
⑫ 제 조 자				⑬ 제 조 국가			

위 방송통신기자재는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

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

유의사항

-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